

◆ 강동구고시 제2026-108호

도시관리계획(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 12. 31.)로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1일

강 동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453-1 외 1필지 관련하여 대상지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, 주차출입구를 지정하는 사항임

II.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-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위 치 (가구번호)	내 용		비 고
		기 정	변 경	
차량출입 불허구간	길동 453-1 외 1필지 (E3)	◦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	◦ 천호대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(길동 453-1 외 1필지)해제 ◦ 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	결정도 참조
주 차 출입구		◦ 1개소 ※ 공동개발 지정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	◦ 2개소 ※ 공동주차출입구 1개소, 주차출입구 1개소	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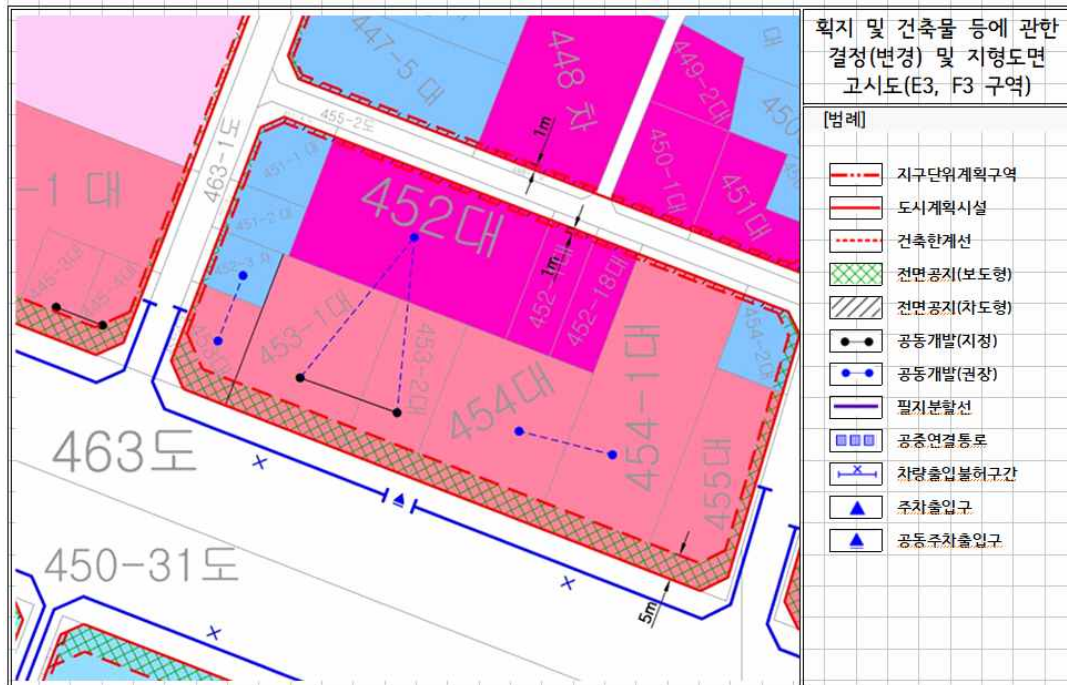
변경 내 용	변경 사유서
◦ (길동 453-1 외 1)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및 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	◦ 공동주차출입구가 천호공영주차장과 저촉되어, 차량 진출입 시 동선 혼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하고 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하고자 함

III. 관계도서: 생략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[기 정]



[변 경]

